의안 번호	100

2026. 10.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제출년월일 : 2026. 10. 1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읍·면·동별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통·반장의 임무로 추가하여 이·통장에게는 이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통장에 대하여 실질적 예우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통에 두는 이장·통장 외에 반장은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

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통·반장의 임무로 추가하고 이·통장에게는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등: 붙임 2

1) 「지방자치법」 제7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3)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

다. 예산조치: 2027년 본예산 편성 요구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10. 6.)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7호의2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제12조(실비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7호의2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 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통장에게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안

나. 비용발생요인

○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통장 1인당 연간 400천원(분기별 100천원) 지급 산출

○ 예상 연간 지원액

- 현원 1,942명×재난특별활동비 100천원× 4회(분기별) = 777,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재난특별 활동비	777,000	777,000	777,000	777,000	777,00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60%), 도비(40%)

3.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311,000**	**311,000**	**311,000**	**311,000**	**311,000**	**1,555,000**
도 비		311,000	311,000	311,000	311,000	311,000	1,555,000
세 출		**466,000**	**466,000**	**466,000**	**466,000**	**466,000**	**2,330,000**
재난특별활동비		466,000	466,000	466,000	466,000	466,000	2,330,000
재원 조달		**777,000**	**777,000**	**777,000**	**777,000**	**777,000**	**3,885,000**
의존 재원	소 계	**311,000**	**311,000**	**311,000**	**311,000**	**311,000**	**311,000**
	도비 보조금	311,000	311,000	311,000	311,000	311,000	311,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66,000**	**466,000**	**466,000**	**466,000**	**466,000**	**2,330,000**
	지방세	466,000	466,000	466,000	466,000	466,000	2,33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4 현행 조례

■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60가구로 구성한다.

제4조(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리·통·반 조정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과 반장의 자격,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여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협조 지원
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및 재난시 주민 홍보·계도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정부나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

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개인정보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금지행위) 이·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목적 외에 리·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부담 및 금품 징수행위
2.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
3. 시정 및 읍·면·동정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기진작) ①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통·반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체육대회·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이·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